벤처기업투자신탁저축약관 개정안 신.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제3조(저축가입) ① (생략) ② 벤처펀드저축은 2022년 12월 31일(수익증권 매수일 기준)까지 가입이 가능하다.	**제3조(저축가입)** ① (현행과 같음) ② 벤처펀드저축은 2025년 12월 31일(수익증권 매수일 기준)까지 가입이 가능하다.	조세특례제한법(§ 16)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
제4조(세제혜택) ① 저축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투자(수익증권 매수일 기준)한 벤처펀드저축 합계액(해당 저축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펀드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)의 최대 3천만원까지 투자금액의 10%를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저축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 ② (생 략)	**제4조(세제혜택)** ① 저축자는 2025년 12월 31일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. ② (현행과 같음)	

2023-01-27 12:52 202203777